

부산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가단3431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혜주(소송구조)

2. C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23,572,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물품에 관한 2020. 11. 27.자 기계설비 및 물품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 15.부터 2021. 1.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대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1392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1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3,572,1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회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지방법원 2021나41198)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10. 29. 소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 B은 2020. 11. 27. 피고 C에게 미지급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 내에 설치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기계설비 및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소외 회사는 선박의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물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소외 회사 대표인 피고 B은 개인사업체인 D를 소외 회사로 법인 전환하면서도 이 사건 물품은 소외 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남겨 둔 채 소외 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나 그에 대해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소외 회사를 2011. 1. 6.경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경에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D 직원들과의 고용관계를 소외 회사로 이전시켰는데, 그러한 법인 전환 과정에서도 이 사건 물품 이전을 누락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개인사업체인 D를 소외 회사로 법인 전환한 것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소외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결국 피고 B이 변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물품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이 아니라 소외 회사인 점, ②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1. 6.경부터 설립되어 있었다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9. 1. 2.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와 그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등 순차적으로 D의 영업을 양수한 점, ③ 소외 회사는 D와 별개로 재무재표를 작성하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서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 되어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양도 양수 기계 및 물품목록 표

NO	기 계 명	DIMENSION	Q. TY	WEIGHT	REMARK
1	빈정머신 TOP PUNGHP-90	1600W × 2100L × 2400H	1ST	7TON	기재양어일제 (2009년식)
2	빈정머신 TOP PUNGHP-90	1600W × 2100L × 2400H	1ST	7TON	기재양어일제 (2009년식)
3	절삭기 TOP PLN (ABM-150)	900W × 1230L × 1200H	1ST	1TON	기재양어일제 (2009년식)
4	빈정머신 TOP PUNGHP-60	1400W × 1650L × 1850H	1ST	3TON	기재양어일제 (2009년식)
5	절단기 TOP PUN GHP-90	1600W × 2000L × 2050H	1ST	5TON	기재양어일제 (2009년식)
6	절단기 TOP PUN GHP-90 작업대	2040W × 7000L × 960H	1EA	800KG	작업대용 기지대
7	작업용 정반	34T × 1380 × 6100	1EA	2,247KG	작업용 DBE
8	작업용 정반	27T × 1440 × 7000	1EA	2,136KG	작업용 DBE
9	작업용 정반	27T × 1440 × 6140	1EA	1,874KG	작업용 DBE
10	로테스브	1000W × 1710L × 2300H	1EA	700KG	PIIT 세라 ROLLER
11	용접기 TIG WELD DL-500	450W × 700L × 780H	3EA	750KG	용접기 (2006~2008년식)
12	용접기 CO2/MAG 600DH	460W × 680L × 900H	1EA	250KG	용접기 (2006~2008년식)
13	용접기 CO2/ARC DL-500	470W × 570L × 700H	2EA	450KG	용접기 (2006~2008년식)
14	용접기 CO2/ARC DL-350	470W × 570L × 700H	2EA	450KG	용접기 (2006~2008년식)
15	용접기 ACR(220V) HK - AL	435W × 610L × 670H	5EA	750KG	용접기 (2006~2008년식)
16	용접기 ACR(280V) HK - AL	435W × 610L × 670H	4EA	300KG	용접기 (2006~2008년식)
SUM TOTAL			27EA	33,787KG	

